



대구대학교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

상호협력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은 교류와 협력 증진으로 동반성장체제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국가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산업 및 그 관련분야의 인적·물적 자원 교류 활성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사항)

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로 최대한 협력한다.

1. 신약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
2. 임상시험 및 실험동물 관련 연구개발
3. 학·연 공동연구 석·박사 학위과정 설치
4. 의료 및 관련 연구자료와 정보의 공유
5.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
6. 기타 양 기관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 3 조 (협약의 이행)

양 기관은 신의성실과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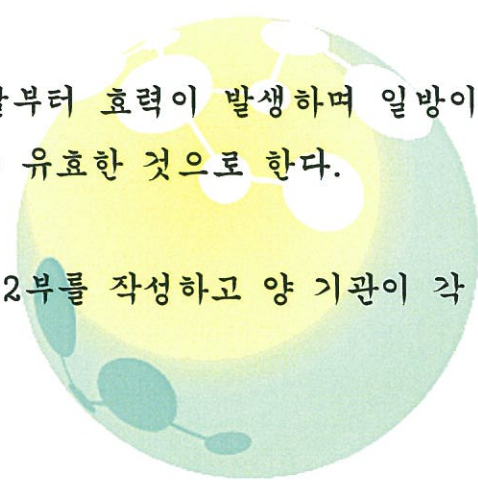
제4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효력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

2011년 11월 15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DGMIF
대구경북철단의료산업진흥재단

이사장 김유승

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557-10